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, 2023회계연도 수입계획 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7,674백만원에서 14,660백만원으로 6,986백만원 증가하였음

나.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(예치금) 예산액을 당초 7,335백만원에서 14,118백만원으로 6,783백만원 증액하고자 함

※ 2023회계연도 지출계획 변경내역 (총 6,986백만원 증액)

- ▶ 재무활동 : 6,783백만원 증액 (7,335백만원→14,118백만원, +92.5%)
- ▶ 식품안전위생관리 : 203백만원 증액* (4,068백만원→4,271백만원, +5.0%)

* 1·2차 기금심의위원회 변경안 심의 의결을 통한 '식품안전 위생관리(식품진흥기금)' 정책사업비 증액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명	당초 (A)	1차변경* (B)	2차변경* (C)	3차변경 (D)	비 고	
					증감 (당초대비) (E=D-A)	증감률 (당초대비) (F=E/A)
합계	11,408	11,408 (-)	11,408 (-)	18,394 (+6,986)	6,986	61.2
식품안전위생관리 (식품진흥기금)	4,068	4,160 (+92)	4,271 (+203)	4,271 (+203)	203	5.0
재무활동 (식품진흥기금)	7,335	7,243 (△92)	7,132 (△203)	14,118 (+6,783)	6,783	92.5
행정운영경비 (식품진흥기금)	5	5 (-)	5 (-)	5 (-)	-	-

<표>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정책사업별 예산 변경내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김영현 (☎ 2133-4718)